



제 1116 호

2013년 7월 5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3- 1015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 송달 2
- 공고 제2013- 1016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213공구) 3
- 공고 제2013- 1018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매소홀로(호구포로~남동 경기장) 도로개설공사2구간_법면부] 5
- 공고 제2013- 1020호 자동차 차령초과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6
- 공고 제2013- 1035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인천서창2 국도42호선 연결도로 광로3-7호선 개설공사(3차)] 7
- 남동구보건소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 소 예정 공고 8
- 남동구보건소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 소 예정 공고 9

고 시

- 고시 제2013- 57호 2013년도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개별공시지가 의 지목별 평균치 고시 10
- 고시 제2013- 58호 도로명주소 고시 11
- 고시 제2013- 5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3
- 고시 제2013- 6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수현지구 소로2-2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 15
- 고시 제2013- 61호 도시관리계획(향촌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 경) 및 지형도면 고시 17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0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사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13조에 따라 시정 명령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도림동 495-3, 495-4번지)
2. 근거법규
 -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9조(단속의 대상) 및 제13조(시정명령 등)

3. 공시송달내용

가. 의무자의 주거 및 성명

구 분	주 소 지	성 명
행 위 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96, 302호(청학동, 성민프라자)	박 * 중
건 축 주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71번길 32, 2층호(주안동)	이 * 순

나. 송달할 서류의 종류 : 붙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서 및 (재)시정명령서 (도림동 495-3, 495-4번지)

4. 공고기간 : 2013. 6. 28 ~ 2013. 7. 12 (15일간)
5. 게시장소 : 남동구 홈페이지 및 주소지 게시판
6.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과 그린벨트팀(☎032-453-2973)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3-1016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213공구>,(12수용1235)]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2013. 5. 23일자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2. 사업의 종류 :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213공구)
3. 사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
4. 공 고 기 간 : 2013. 6. 28 ~ 7. 12
5. 재결서정본 수령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도시관리과 (☎032-453-2992)
6. 공시송달내용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정본
7. 공시송달대상 : 소유자 및 관계인 (불임참조)
8. 기 타 : 재결서 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재결서 공시송달 대상(12수용1235)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 사업명 :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213공구)

연번	성명	송달 주소	상세 주소	우편번호	비고
1	문*숙	인천 남동구 구월로 192	1304동 204호(구월동,구월힐스테이트)	405-761	소유자
2	박*순	인천 남동구 구월로 192	1304동 204호(구월동,구월힐스테이트)	405-761	관계인
3	성*공영(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48-6번지 도정오피스텔 1514호	430-010	관계인
4	김*아	서울 양천구 목동	904번지 신시가지아파트 408동 701호	158-050	관계인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018호

재결서 정보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매소홀로(호구포로~남동경기장) 도로개설공사2구간_법면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2013.5.23일자 재결서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매소홀로(호구포로~남동경기장) 도로개설공사2구간_법면부]
3. 사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
4. 공 고 기 간 : 2013. 7. 1 ~ 7. 15
5. 재결서정본 수령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건설과 (☎453-2712)
6. 공시송달내용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정보
7. 공시송달대상 : 소유자 및 관계인

연번	성명	송달주소	상세주소	비고
1	문*선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 상가주택 4층	소유자
2	김*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송로70 송도웰카운티2단지아파트 ***동 ***호	소유자
3	공*만	인천 남동구 수산동	찬우물로 **	관계인
4	공*숙	서울 마포구 창전동	41-* ***호	관계인
5	김*윤	인천 남구 문학동	소성로350번길 19-* 유성주택 ***호	관계인
6	송*섭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	관계인
7	김*정	서울 은평구 역촌동	역말로4길 11-1* ***호(역촌동, 드림빌)	관계인
8	김*숙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한천로 1*길 **	관계인

8. 기 타 : 재결서 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020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2013. 7. 1 등기우편물 반송)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13. 7. 19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압류(저당)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3. 7. 1 ~ 7. 19.

2. 대상 자동차

신 청 대 상 차 량			이해관계내용	이 해 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 명	사용본거지			
서울72러4840	윤*현	서울 강남구 연주로	자동차 저당설정 을부번호:11172001000425 저당일자:2001.01.31.	안*갑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16다길,12-9(목동)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자동차등록팀 (☎453-2941)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035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인천도시계획시설 [인천서창2 국도42호선 연결도로 광로3-7호선 개설공사<3차>(13수용0209)]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2013. 6. 20일자 송부하였으나, 송달받으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사업의 종류 : 인천서창2 국도42호선연결도로 광로3-7호선 개설공사 <3차>
3. 사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
4. 공 고 기 간 : 2013. 7. 5 ~ 7. 22 (17일간)
5. 재결서정본 수령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과(☎032-453-2992)
6. 공시송달내용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정본
7. 공시송달대상 : 소유자 및 관계인
○ 최 * 엽 : 인천 연수구 청학동 178
8. 기 타 : 재결서 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받으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13-9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3년 7월 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3. 7. 15.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3. 7. 5 ~ 7. 15(11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 번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음식점	장서- 141	학교끝났다 땡땡여기모여라	박*호	장아산로199번길 11, *02호 (서창동, 서울아트빌)	사업자등록폐업	2012.2.24	2013.7.15

6. 고지사항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3. 7. 15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청)에 행정심판
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032-453-2623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13-16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3년 7월 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3. 7. 15.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3. 7. 5 ~ 7. 15(11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 번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737	소래맛김	박*조	소래역로12, 1층 9호,10호 (논현동,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사업자등록폐업	2013.3.29	2013.7.15

6. 고지사항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3. 7. 15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032-453-2626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3-57호

개발제한구역 제외 지목별 평균치 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제4호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지목별 평균치의 개요

가. 기 준 일 : 2013. 1. 1.

나. 단위면적 : m^2

다. 지목현황 : 28개 지목

라. 고시내역 : 개발제한구역 제외 지목별 평균치

(단위 : 원/ m^2)

구 분	평균치	구 분	평균치	비고
전 체	868,228			
전	532,093	철도용지	378,925	
답	652,702	제방	228,131	
과수원	340,012	하천	169,874	
목장용지	558,325	구거	439,085	
임야	64,985	유지	320,741	
광천지	-	양어장	-	
염전	-	수도용지	186,957	
대	1,426,278	공원	289,141	
공장용지	961,986	체육용지	665,000	
학교용지	1,242,108	유원지	-	
주차장	1,066,886	종교용지	1,015,146	
주유소용지	1,792,050	사적지	-	
창고용지	925,322	묘지	617,988	
도로	443,590	잡종지	701,793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3-5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46번길 20
2. 변경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67의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1건)						
변경 전 종전지번	변경 후 종전지번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변경사유	비고
별 도 열 람(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3.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가. 도로명주소는 2013. 7. 5일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일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4. 도로명주소 변경 등

가.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참고사항

가.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나.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에정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76-1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46번길	20	20091116	소래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3.07.05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역로47번길 20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0를 건물번호로 부여	

☐ 남동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조서

연번	변경 전 종전지번			변경 후 종전지번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변경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0-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0-11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67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경없음		2013.07.05	종전지번 오류로 인한 종전지번 변경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9-3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경없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75번길	14-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75번길	14-15	2013.07.05	건물번호 중복 부여로 인한 변경	논현동 589-17'신축건물 논고개로175번길 14-13'으로 부여예정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3-5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7월 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 라목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사회복지시설)의 결정(변경) 사항임.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 공간시설
 - 공원 (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비루 공원	근린 공원	만수동 1-427번지 일원	41,827	-	41,827	2013.06.24 인고 제2013-98호	-
변경	-	비루 공원	근린 공원	만수동 1-427번지 일원	41,827	-	41,827	-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비루공원	공원 내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공원부지 내 기 존치하고 있는 경로당 부지에 사회 복지시설 설치를 통하여 공원활용의 효율을 높이고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사회복지시설	만수동 1-446번지 일원	-	증) 991	991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사회복지시설	신설 증) 991㎡	무허가 건물로 이용되고 있는 경로당의 노후화에 따라 경로당의 신축을 통하여 급증하는 고령화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하 고자 함

3. 지형(결정)도면 : ‘별첨’(게재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3-6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수현지구 소로2-2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수현지구 소로2-2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 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3년 7월 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9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수현지구 소2-2호선)
 - 나. 명 칭 : 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소로2-2호선 B=8.0m, L=163.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동구청장(도시관리과)
 -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100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나. 준공예정일 : 201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있음) :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용 지 조 서(변경있음)

연 번	소재지			면적(㎡)				소유자	비고
	동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잔여		
					도시 계획시설	비도시 계획시설			
1	장수동	397-3	도	655	16	-	639	인천시	
2	장수동	396-1	도	82	82	-	-	인천시 남동구	
3	장수동	396-3	도	40	40	-	-	한*락	
4	장수동	396-2	도	258	229	29	-	이*	미등기
5	장수동	751	도	5,800	166	112	5,522	국(건설부)	
6	장수동	388-2	도	168	166	2	-	원*덕, 이*창, 오*섭	공유
7	장수동	410-7	전	47	47	-	-	인천시	
8	장수동	410-1	도	223	63	14	146	인천시 남동구	
9	장수동	410-8	전	167	155	-	12	인천시	
10	장수동	395	전	366	18	-	348	오*순	
11	장수동	397-2	도	30	13	-	17	인천시, 인천시남동구	공유
12	장수동	395-1	도	10	4	5	1	남동구	
13	장수동	388-7	도	142	33	93	16	남동구	
14	장수동	386-2	도	13	8	5	-	오*섭	
15	장수동	386-7	도	124	-	24	100	인천시	
16	장수동	410-2	도	321	185	49	87	한*교	변경전
16	장수동	410-2	도	321	136	55	130	한*교	변경후
17	장수동	410-3	도	261	159	68	34	오*현, 인천시	공유
합 계				8,707	1,335	407	6,965		

☐ 지장물 조서(변경없음)

번 호		건 물 소 재 지		물건의 용도	건물구조	단위	총수량	편입수량	잔여 수량	소 유 자		비고
		동명	지 번							주 소	성 명	
1	1	장수	751,388-7	입구간판	전자간판	EA	1.0	1.0	-	남동구 장수동 388-3	이*민	
	2			촉백나무	B0.15,H5.0	주	101.0	101.0	-			
	3			단풍나무	B0.20,H3.0	주	10.0	10.0	-			
2	1	장수	751,410-2	소나무	B0.05,H1.5	주	29	29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9길16 107-1**3 (역삼동 역삼래미안)	양*숙 외 1인	
					B0.08,H1.8	주	17	17	-			
					B0.10,H3.0	주	1	1	-			
	2			버드나무	B0.35,H6.0	주	1	1	-			
	3			느티나무	B0.10,H2.0	주	3	3	-			
	4			벗나무	B0.1,H2.5	주	18	18	-			
	5			철쭉	H0.5	주	10	10	-			
	6			대추나무	B0.10,H2.0	주	1	1	-			
	7			사과나무	B0.10,H2.0	주	1	1	-			
	8			향나무	B0.10,H2.5	주	4	4	-			
	9			매화나무	B0.10,H2.0	주	2	2	-			
	10			앵두나무	B0.10,H2.0	주	1	1	-			
	11			모과나무	B0.10,H2.5	주	1	1	-			
	12			반송나무	B0.20,H3.0	주	4	4	-			
	13			주목나무	B0.10,H2.0	주	4	4	-			
	14			벗나무	B0.10,H2.5	주	6	6	-			
	15			화양목	H0.5	주	25	5	-			
	16			단풍나무	B0.10,H2.0	주	4	4	-			
	17			사철나무	B0.03,H1.5	주	364	364	-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3- 61호

도시관리계획(향촌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향촌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7월 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향촌구역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I. 향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0,109,110번지 일원	203,241.1	

-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주거 지역	소 계	203,241.1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34,306.7	16.9	
	제3종일반주거지역	168,934.4	83.1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총괄표

구분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12	1,254	17,131.7	1	469	12,468.6	3	305	566.0	8	476	4,097.1
	중로	3	649	14,455.0	1	469	12,468.6	-	-	-	2	180	1,986.4
	소로	9	605	2,676.7	-	-	-	3	305	566.0	6	296	2,110.7

주) 도로연장 및 면적은 구역 내의 도로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도로번호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80	20~29.8	집산 도로	840 (469)	대1-14	중1-62	일반 도로		'01.10.29	
기정	중로	3	363	12	국지 도로	96 (96)	향촌구역계 (만수동74-25)	중1-180	일반 도로		'05.11.10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84 (84)	중1-180	향촌구역계 (만수동109-18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0	9~12.5	국지 도로	1,448 (21)	중1-180	소2-1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3	6	국지 도로	138 (60)	중1-62	중1-18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4	6	국지 도로	60 (21)	중1-62	중1-18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5	6	국지 도로	60 (60)	소3-16	중1-18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337 (95)	중1-180	중3-363	일반 도로		'01.10.8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47 (47)	소3-16	중1-18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	4	국지 도로	22 (22)	소3-16	만수동 80-112	일반 도로		'07.1.10	
기정	소로	3	1	4	국지 도로	13 (13)	소3-16	만수동 80-112	일반 도로			

주) ()는 구역 내 도로의 연장임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	주차장	노 외 주차장	만수동 1116-3번지 일원	1,172.5	'05.11.10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	공 원	소공원	만수동 1117-3번지 일원	1,237.6	'01.10.08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공공청사	동사무소	만수동 1116-2번지 일원	1,400.3		
기정	공공청사	파출소	만수동 1119-2번지 일원	513.5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있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및 조성 계획

가) 계획방향

- 가구계획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적정 가구규모의 확보 및 인접 가구규모와의 상호 연계를 고려한 적정 가구규모 설정
- 획지계획 : 개발용도, 필지형태, 토지소유자, 소규모 필지 등 현황과악을 토대로 획지계획 수립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	1	147,684.7	①	147,684.7	·공동주택용지
기정	-	2	561.6	①	561.6	·근린생활시설용지
기정	-	3	24,550.7	①	21,977.9	·공동주택용지
				②	1,400.3	·동사무소
				③	1,172.5	·주차장
기정	-	4	5,718.4	①	1,265.3	·근린생활시설용지
				②	1,265.4	·근린생활시설용지
				③	515.9	·종교용지
				④	1,237.6	·소공원
				⑤	863.0	·현지개량지역
				⑥	547.0	·현지개량지역
기정	-	5	3,810.6	①	1,269.3	·근린생활시설용지
				②	1,405.3	·근린생활시설용지
				③	147.0	·현지개량지역
				④	989.0	·현지개량지역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	6	2,184.3	①	1,096.8	·근린생활시설용지
				②	469.4	·파출소
				③	44.1	·파출소
				④	574.0	·현지개량지역
기정	-	7	1,946.5	①	539.4	·수련시설용지
				②	580.9	·유치원용지
				③	23.2	·현지개량지역
				④	803.0	·현지개량지역
변경	-	7	1,946.5	①	539.4	·수련시설용지
				②	580.9	·근린생활시설용지
				③	23.2	·현지개량지역
				④	803.0	·현지개량지역
기정	-	8	405.0	①	405.0	·현지개량지역

3) 향촌지구 주 진입도로 하단부 용지조서

연번	도면위치	지 번	소유자		면적(㎡)	비 고
			당초	변경		
1	3B1L	1116-1	남동구		21,249.7	공동주택용지
2	6B1L	1119-1	남동구		1,096.8	근린생활시설용지
3	6B2L, 6B3L	1119-2,-3	남동구		513.5	파출소용지
4	3B2L	1116-2	남동구		1,400.3	동사무소
5	4B3L	1117-4	남동구		515.9	종교용지
6	4B1L	1117-1	남동구		1,265.3	근생용지
7	4B2L	1117-2	남동구		1,265.4	근생용지
8	5B1L	1118-1	남동구		1,269.3	근생용지
9	5B2L	1118-2	남동구		1,405.3	근생용지
10	7B2L	1120-2	남동구		580.9	유치원용지
11	7B1L	1120-1	남동구		539.4	사회복지시설용지
12	4B4L	1117-3	남동구		1,237.6	소공원용지
13	3B3L	1116-3	남동구		1,172.5	주차장용지
14	4B5L	80-131외13	은계자,남동구		863.0	현지개량용지
15	4B3L	80-111	남동구		4.0	현지개량용지
16	4B6L	80-505	황장아,남동구		170.0	현지개량용지
17	4B6L	80-24, 80-507	박광철		186.0	현지개량용지
18	4B6L	80-91	최정행		191.0	현지개량용지
19	5B4L	80-86	최정행		89.0	현지개량용지
20	5B4L	80-31	최정행		311.0	현지개량용지 최정행 단독소유
21	5B4L	80-34, 80-35	신현광		228.0	현지개량용지
22	5B4L	80-33	황경주,박현욱		150.0	현지개량용지
23	5B4L	80-30	정찬호		120.0	현지개량용지
24	5B4L	80-274	김영환		85.0	현지개량용지
25	6B4L	80-285, 80-286	원희숙		151.0	현지개량용지
26	6B4L	80-695	조인호		73.0	현지개량용지

연번	도면 위치	지 번	소유자		면적(㎡)	비 고
			당초	변경		
27	6B4L	80-287	박용구, 남동구		112.0	현지개량용지
28	6B4L	80-307	송용섭		122.0	현지개량용지
29	6B4L	80-704	지태완		64.0	현지개량용지
30	7B4L	80-309	주경희		47.0	현지개량용지
31	7B4L	80-753	변인만		64.0	현지개량용지
32	7B4L	80-322	한정남, 김경애		130.0	현지개량용지
33	7B4L	80-323	장동연, 남동구		118.0	현지개량용지
34	7B4L	80-324	이규섭, 이은아		89.0	현지개량용지
35	7B4L	80-779	신원호		78.0	현지개량용지
36	7B4L	80-337	홍재남		92.0	현지개량용지
37	7B4L	80-338	국중일		94.0	현지개량용지
38	8B	80-874	박명란		86.0	현지개량용지
39	8B	71-129	박귀병, 남동구		94.0	현지개량용지
40	8B	71-177	조경숙		69.0	현지개량용지
41	8B	71-173	남동구		33.0	현지개량용지

주) 토지매매를 통한 소유자의 변동사항이 많아 소유자 기재사항 삭제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있음)

1) 공동주택용지(1)

구분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A	1-①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250% 이하 / 허용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25층 이하
			배 치	·별표1 참조
			형 태	·별표2 참조
			색 채	·별표2 참조
			건축선	·중로 1-180호선변 : 2m

2) 공동주택용지(2)

구분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A	3-①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220% 이하 / 허용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25층 이하
			배 치	·별표1 참조
			형 태	·별표2 참조
			색 채	·별표2 참조
			건축선	·중로 1-180호선변 : 2m ·중로 3-363호선변 : 1m ·소로 2-312호선변 : 2m

3) 공공청사용지

구분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B	3-② 6-②	용 도	·지정용도 : 동사무소(3-②), 파출소(6-②,③)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별표1 참조
			형 태	·별표2 참조
			색 채	·별표2 참조
			건축선	·중로 1-180호선변 : 2m ·중로 3-363호선변 : 1m ·소로 3-17호선변 : 1m

4) 종교용지

구분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C	4-③	용 도	· 지정용도 :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 내 선교유치원 허용)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중로 3-363호선변 : 1m

5)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있음)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D	2-①, 4-①,② 5-①,② 6-①	용 도	· 지정용도 : 불허용도를 제외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도 ·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식물관련시설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공장 -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제조업 수리점 등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제한용도(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 청소년보호법에서 제시한 청소년 유해업소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중로 1-180호선변 : 2m · 중로 3-1호선변 : 1m · 소로 3-13호선변 : 1m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변경	D, E	2-①, 4-①,② 5-①,② 6-① 7-②	용 도	· 지정용도 : 불허용도를 제외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도 ·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식물관련시설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공장 -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제조업 수리점 등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제한용도(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 청소년보호법에서 제시한 청소년 유해업소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중로 1-180호선변 : 2m · 중로 3-1호선변 : 1m · 소로 3-13호선변 : 1m

6) 유치원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E	7-②	용 도	· 지정용도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변 경	E	7-②	용 도	· 지정용도 : 불허용도를 제외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도 ·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식물관련시설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공장 -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제조업 수리점 등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제한용도 (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 청소년보호법에서 제시한 청소년 유해업소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7) 수련시설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F	7-①	용 도	· 지정용도 : 수련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중로 1-180호선변 : 2m · 소로 3-17호선변 : 1m

8) 현지개량지역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G	4-⑤,⑥ 5-③,④ 6-③ 7-③,④, 8-①	용 도	· 지정용도 : 불허용도를 제외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도 · 불허용도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아파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식물관련시설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공장 -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제조업 수리점 등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제한용도(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 청소년보호법에서 제시한 청소년 유해업소
			건폐율	· 80% 이하 : 연면적 60㎡ 이하 건축물 · 70% 이하 : 연면적 60㎡ 초과 및 85㎡ 이하 건축물 · 60% 이하 : 연면적 85㎡ 초과 건축물 (단, 건축선(1m)에 접한 필지는 건폐율 인센티브(5% 이하) 적용)
			용적률	· 300% 이하 (단,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및 연면적 60㎡ 이하 단독주택에 한하여 350% 적용)
			높 이	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거리의 2.5배 이하 나. 건축물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함(너비 8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외) - 높이 4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 높이 8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 높이 8m 초과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4 이상 ※ “가”, “나”의 기준은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및 연면적 170㎡ 이하 단독주택에 한함
			배 치	· 별표1 참조
			형 태	· 별표2 참조
			색 채	· 별표2 참조
			건축선	· 중로 1-180호선변 : 2m · 소로 3-13호선변 : 1m · 소로 3-15호선변 : 1m · 중로 3-363호선변 : 1m · 소로 3-14호선변 : 1m · 소로 3-17호선변 : 1m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규정의 1/2 이상 설치 (단, 단독주택 및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에 한함)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1) 경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공동주택용지	- 공동주택 건축물은 층수를 25층 이하로 규제하고 동별로 층수를 다양화하여 시각적 개방감 확보 유도 - 비휴먼스케일의 건축물군이 생기지 않도록 건축물의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바람직한 도시경관 형성 유도	고층화 / 초고층화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중로 1-180호선변 획지	-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제어하고 가로변의 미관을 고려한 건축계획 유도 - 보행기능의 강화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배후 주거지의 서비스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상업가로의 조성	중층화

2)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공동주택 획지 내 보행 및 차량동선	- 최소폭원 3m 이상으로 계획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 유도 - 단지 내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 - 단지 내 진입도로와 외곽도로는 T자형 교차를 원칙으로함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대지의 구간 - 공동주택용지의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중로 1-180호선 도로변 - 단독주택지와 인접한 공동주택용지 획지변	
	차량출입 허용구간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의 구간 및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의 구간 단)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의 구간 중 도로의 교차로,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잔후 10m 이내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을 불허함	

3)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	중로 1-180호선변, 소로 2-312호선변	- 전면공지 (보도부속형) : 중로 1-180호선변 및 소로 2-312호선변	- 중로 1-180호선변 : 2m 건축한계선 지정 - 소로 2-312호선변 : 2m 건축한계선 지정
	중로 3-363호선변, 소로 3-13, 3-14, 3-15, 3-17호선변	- 전면공지 (보도부속형) : 중로3-363호선, 소로3-13, 3-14, 3-15, 3-17호선변	대지경계선에서 1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4)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가) 예정가격 :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감정평가액)

나) 일반공급기준 :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

다) 특별공급기준

① 수의계약 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에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도로·학교·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으로 공급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추첨에 의한 공급의 경우

② 지명경쟁에 의하여 처분 할 수 있는 경우

- 시행자가 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향촌구역 및 주 진입도로 구간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되, 유찰시(2회)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

라) 토지용도별 세부처분계획

처 분 대 상 토 지			처분방법 및 조건	예정가격
구 분		면 적(㎡)		
합	계	203,425	-	-
주 용 거 지	소	계	-	-
	공 동 주 택 용 지	169,041.4	수의계약	감정평가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4,214.6	수의계약	감정평가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2,649.1	지명경쟁	감정평가
	현 지 개 량 용 지	4,364.2	-	-
도 시 기 반 시 설 용 지	소	계	-	-
	도	로	-	-
	공	원		
	주 차	장		
	동 사 무 소	1,400.3		
	파 출 소	513.5		
기 타 시 설 용 지	소	계		
	종	교	수의계약	감정평가

【별표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제어요소	제 어 지 침	제어구역
주동배치	- 남향위주로 배치하되 가로망에 평행하거나 직교하게 하여 전체배치에 질서감을 부여 -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적정배치하고, 변화 있는 층고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함 - 주만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과 형태를 다양화하여 배치	공동주택용지
	- 부지의 효율성 및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의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적절하게 배치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구역 전체
건축한계선	정연한 가로경관의 확보 및 보도 확폭	- 중로 1-180호선변 : 폭 2m - 소로 2-312호선변 : 폭 2m - 중로 3-363호선변 : 폭 1m - 소로 3-13호선변 : 폭 1m - 소로 3-14호선변 : 폭 1m - 소로 3-15호선변 : 폭 1m - 소로 3-17호선변 : 폭 1m

【별표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계획

제어요소	제 어 지 침	제 어 구 역
외 장	- 색채-건축물 외벽색채의 기초는 품격 있고 친환경적인 색조로 유도함 - 형태 / 재료 -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질이 높은 것으로 함	구역전체
건축물 형태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구역 전체
조 명	- 기존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의 증진을 위해 건축계획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조명설치 유도 -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등 설치권장	가로변 및 보행통로 주변
건축설비	-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 건축물 안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주변 경관에 배려하도록 함 - 가로변에 조성되는 건축물의 설비시설은 조경 등으로 차폐하여 시각적 위압감 완화	구역전체
캐노피 / 차양막	- 보도 및 보행가도와 접하는 건축물에 설치 권장 - 최저높이 3.5m 이상, 최고 돌출길이 3m 이하	중1-180호선변
경사지붕	- 주거환경 및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조성 권장 - 간선가로변 건축물은 가로경관이나 옥상경관의 향상을 위해 평지붕의 설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박공지붕이나 모임지붕 등을 권장	공동주택
벽면처리의 통일성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중1-180호선변
개구부가 없는 벽면처리	폭 20m 이상의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지 않음	중1-180호선변
간판 및 광고물	- 건축물에 사용되는 안내판 및 광고물의 설치 가능한 1층 출입구 부근에 종합안내판으로 설치하여 가로의 미관을 보호 - 경사지붕에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금지	구역전체
1층부 형태	- 쇼윈도-상업가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쇼윈도 등의 설치 - 투시형 셔터 / 투시벽 1층 전면용도와 가로활동과의 연속성 유지 및 활성화 도모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 그 래픽 셔터 등을 사용	중1-180호선변